

해외 미술품 유통분쟁 해결제도를 통해 살펴본 국내 미술품 진본성 확보방안

A Study on the New Scheme for South Korea's Artwork Authenticity
With a Review of the Overseas Art Distribution Dispute Setting System

임성윤*

Rim, Sung Ryun

변승혁**

Byun, Seung Hyuk

〈목 차〉

- I. 서 론
- II. 미술품 유통시장 거래 형태 및 해외감정제도
- III. 해외 미술품 분쟁해결 제도
- IV. 국내 미술품 유통 진본성 확보 방안
- V.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

주제어 : 미술유통, 감정, 중재, 진본성

* 평택대학교, 피어선칼리지 조교수(sungrim@ptu.ac.kr)

** 한신메디피아, 기획차장(peter0948@hsmedipia.com)

I. 서론

최근 한국의 미술유통시장은 급격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¹⁾ 문화산업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미술유통시장의 활성화는 매우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음악 및 타 문화예술의 저작권 관련 법률과 인식의 점진적 발전에 따른 성장과 달리 미술품 진본성(眞本性) 확보의 어려움이 특히 시장의 건강한 발전과 유통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래에 자주 발생되고 있는 위작미술품의 문제에서 볼 수 있듯 미술유통시장에서 미술품의 진본성 확인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한국 문화산업의 양적, 질적 성장에 발맞추어 미술유통시장 또한 안정적인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미술품의 진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긴 역사동안 활발한 미술품 유통거래가 이루어져 왔고 그 과정에서 미술품의 진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온 영국과 프랑스의 제도를 통해 국내 미술시장에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물론 현재 미술품의 진본성 확보를 위한 전문 감정사의 자격 및 요건에 대해서는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공식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현실이다.²⁾ 비록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제도는 아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각 나라의 실정에 맞는 미술품 감정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그 방식에 있어서 확연히 차별되는 방법들을 선택하고 있다.³⁾ 우선 영국은 미술유통시장에 국가적 측면의 제도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술전문가들에 의한 완전자율적 감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는 국가의 사법부와 행정부 차원의 국가인증 미술품 감정사 제도를 통해 미술유통시장에서의 감정업무가 권위와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매사 운용방식 및 미술품의 감정·경매·매도의 과정에서 법적책임과 관련하여 영국과 프랑스는 각자의 방식으로 미술품의 진본성 확보를 위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 미술유통시장에서의 진본성 확보방안 특성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미술유통시장 미술품의 안정적인 진본성 확보방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미술시장실태조사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자료가 부족했던 미술시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근 보도자요에 따르면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4,942억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미술시장 전년 대비 24.7% 성장을 보이고 있다.(2008년 이래로 최고 성장)

2) 남궁술, 박광동, “유럽문화의 문화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미술품매매에 있어서 진본성 확보를 위한 유럽의 법적대응, p105. 한국법제연구원(2008).

3) 최병식, 한국미술품감정의 중장기 진흥 방안, p7. 문화체육관광부(2006)

II. 미술품 유통시장 거래 형태 및 해외감정제도

미술유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미술품은 법적인 해석으로는 일종의 물건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매매형태 및 방식에 있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제한도 없다.⁴⁾

1. 미술품 비공개 유통시장

(1) 매도자와 매수자의 직거래 유통

미술품 매도자인 작가와 매수자가 직접 협상을 통해 미술품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직거래 방식은 중간거래상 없이 작가의 진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거래 형태이다.

하지만 작가의 국가적 위치, 생존여부, 접촉방법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가와 친분이 있거나 작가의 작품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매수자에 의한 소규모 거래로만 유통되고 있다.

4) 단, 우리나라의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의 경우에는 제한을 받는다.

문화재보호법 제10장 제75조 : 매매 등 영업의 허가

- ①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5.1.29]]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5.1.29]]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5.1.29]]
-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시행일 2018.12.13]]
 1. 상호 변경
 2. 영업장 주소지의 변경

문화재보호법 제10장 제76조 : 자격요건

- ①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고고학·인류학·미술사학·민속학·서지학·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3.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범위, 전공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중간거래상을 통한 유통

미술유통의 형태 중 중간거래상을 통한 방법은 화랑거래방식이 있다. 화랑은 미술품을 감상하기 위한 장소로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기 시작하였으며, 특정 작가와의 계약거래⁵⁾를 통해 개인 또는 단체의 형태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이곳에서 미술품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형태이다.

2. 미술품 공개 유통시장

(1) 경매를 통한 유통

경매를 통한 미술품 유통시장은 고미술작품에서 현대미술작품까지 다양한 종류의 미술품이 거래되고 있다. 거래진행 시 전문경매사에 의한 입찰과 규칙 속에서 자율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판매기록에 대한 공개를 통해 투명한 미술품유통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때문에 경매를 통한 미술품 유통은 미술품의 감정평가 신뢰성 확보와 경매방식의 공정성, 제도적 장치 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⁶⁾

국내에서 경매를 통한 미술품 유통은 1999년 서울옥션을 시작으로 2005년 케이옥션이 설립되면서 현대적인 미술품 유통시장이 형성되었다. 20여년 남짓한 짧은 역사지만 한국 미술품 유통시장의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해오고 있다. 서울옥션이나 케이옥션은 미술품의 경매뿐만 아니라 미술품담보대출 및 미술유통에 관한 아카데미도 함께 운용되고 있다.

(2) 아트페어를 통한 유통

아트페어⁷⁾는 미술품의 거래뿐만 아니라 화랑 간의 미술품 정보교관 및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행사이다. 따라서 한 장소에 다수의 화랑이 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미술품 전시회가 개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단일 화랑의 전시회 보다 큰 규모를 가지고 있기에 일반 대중의 관심이 높고, 신진 작가부터 경험이 많은 작가까지 폭넓은 미술품이 전시되기 때문에 저가부터 고가의 작품까지 접할 수 있어 작품거래가 매우 높은 편이다.

국내에는 1995년 서울국제아트페어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2019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2019 마니프서울국제아트페어, 2019 대구아트페어 등이 다수의 아트페어가 개최되고 있다.

5) 화랑은 작가와의 계약형태에 따라 대관전, 기획전, 초대전 등으로 구분된다. 대관전은 작가가 전시에 필요한 대관료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의 전시회이고, 기획전은 작가가 대관료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도록제작비를 부담하는 형태이다. 초대전은 전시운영에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을 화랑이 부담하는 형태이다.
6) 박우찬, “미술품 경매제도의 실효성과 문제점”, 미술세계, 1993. 3. p65.
7) 김봉수, 미술시장실태조사 결과를 통한 국내 미술시장현황 분석, 한국저작권위원회, 몇 개 이상의 화랑이 일정한 장소에 군집하여 미술작품을 판매하는 전시행사를 말한다. 최근에는 한명의 작가가 개인적으로 부스를 꾸려 진행되는 작가 참가 형식 아트페어도 개최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p5-6

Ⅲ. 해외 미술품 분쟁해결 제도

1. 해외 감정제도

현재 미술품 유통과정에서 진본성 확보를 위한 전문 감정사의 자격 및 요건에 대해서는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하여,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공식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미술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감정사들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감정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술품 유통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는 어떤 감정평가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영국 감정제도 및 기관

영국은 미술품 유통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진 국가지만 국가에서 공식적인 감정기구를 설립하거나 감정사 제도를 두고 있지는 않다.⁸⁾ 하지만 국제적인 미술품유통시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가의 개입 없이 전문적인 미술감정사들에 의한 자율적 감정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율적 감정제도이지만 대형박물관이나 경매회사들이 참여하여 체계적인 절차에 의해 감정이 이루어진다. 특히 대학, 박물관, 경매회사 등에 의해 미술품 감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전문적인 감정평가사들을 양성하고 있다.

1) 옥스퍼드 어센티케이션 감정전문회사

1997년 설립된 옥스퍼드 어센티케이션(Oxford Authentication)은 20,000여 건의 미술품 감정을 실시하고 있고, 미국, 유럽, 호주, 뉴질랜드, 홍콩,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등 50여명의 에이전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⁹⁾

짧은 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열발광법(TL : thermoluminescence) 감정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실에서 수년간의 연구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 대영박물관 감정제도

영국의 대영박물관은 각 국에서 수집된 소장품들의 관리와 보존을 위해 전담관리부서를 두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Object Identification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8) 최병식, 한국미술품감정의 증장기 진흥 방안, 문화관광부, 2006. p.146.

9) www.oxfordauthentication.com 참조

Object Identification 서비스는 일반 대중이 각 부서와 연관이 있는 물품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경우 무료로 감정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때의 감정은 법적 책임이 없으며 시가 평가 및 감정서를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

3) 고미술 딜러 협회 (BADA : The British Antique Dealers' Association)

1918년 설립된 BADA는 400여명 정도의 고미술품 거래 딜러들로 조직된 단체로서 거래표준 준수와 고도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딜러만이 가입할 수 있다. BADA 회원들은 엄격한 내규 준수와 매년 위원회(Council)를 통해 자격을 의무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구매자들은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BADA에 소속된 딜러와 고미술품을 거래를 할 수 있다.

BADA 는 소장 고미술품에 대한 가치와 제작연대 등에 관한 평가를 유료로 하며 3명 이상의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된다. 그러나 감정 및 평가의 과정에서의 정확성에 대해 BADA 및 평가단의 어떤 전문가도 보장을 해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BADA는 내규(By-laws)를 통해 소속 딜러와 거래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서 분쟁의 발생 시 무료로 중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¹⁰⁾

(2) 프랑스 감정제도 및 기관

프랑스의 감정제도는 앞서 살펴본 영국의 감정제도와는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다.

영국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옥스퍼드나 대영박물관과 같은 권위 있는 단체를 통해 조직적인 감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개인적 활동을 하는 감정사들이 감정을 진행하고 있고 단체 및 기관은 정보의 전달 및 감정 활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만 담당하고 있다.

1) CNES(Chambre Nationale des Experts Spécialisés en Objets d'Arts et de Collection)

1967년에 설립된 CNES는 프랑스 각지 감정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재 약 200여명이 전문적인 감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일반 감정기관 및 단체와는 다르게 자체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감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제도가 반영된 시험을 통해 전문 감정사를 선발하고 있다.¹¹⁾ 전문감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입문단계부터 일반과정까지

10) 회원이 판매한 물품의 진본성과 관련해 의견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발생한 것이 내규가 효력을 가지기 이전이든 이후이든 관계없이) 그 차이가 거래와 관련된 당사자들 간에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가 상황을 고려한 후 의견 차이에 관계된 회원 또는 회원들에게 의견 차이에 대해 제출하는 것이 협회와 그 물품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통보한다면, 그 회원 또는 회원들은 의견 차이를 중재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 내규에 따라 요구되는 중재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중재에 제출되는 형태를 규제하고, 사람이나 사람들을 중재자로 행동하도록 지명하며, 중재의 행동에 관해 전반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http://www.bada.org/metadot/index.pl?id=2189> 참조. (최종검색 : 2019.10.25)국내외 미술품감정 관련 법제 연구 및 미술품감정 인력의 윤리규정 (이재경, 2015)

연수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CNES가 주최하는 시험에 합격한 이후 정식 교육생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정식 교육생이 된 이후에는 정규과정을 통해 CNES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및 세미나에 참여하고 최종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CNES에서 인정하는 전문 감정사가 될 수 있다.¹²⁾

2) 전문감정사

프랑스의 전문감정사는 공인된 자격이나 요건은 없지만 현장에서의 감정 경험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물론 프랑스에도 공공기관을 통한 전문감정사 인증제도¹³⁾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전문감정사 활동을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며, 대부분의 전문감정사는 대체로 응용미술(arts appliqués), 전통공예(artisanats), 조형미술(arts plastiques), 장식미술(arts décoratifs)을 전공하고 수년간의 해당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을 통해 전문지식을 쌓고 있다.

3) 감정사 연합

감정사 연합의 대표적인 국립 예술전문감정사 연합(FNEPSA)¹⁴⁾은 1987년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프랑스 및 벨기에 등에서 예술전문감정사로 활동하고 있는 약 600여명으로 구성된 연합이다. 국립 예술전문감정사 연합에 소속된 감정사들은 다양한 고미술페어 및 살롱 등에서 보험사, 세관, 행정부처와의 공조를 통해 경매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영국 미술품 유통 분쟁

(1) Prohibition False Trade Descriptions¹⁵⁾

1968년 Trade Descriptions Act(거래상 설명에 관한 법) 제정을 통해 마련된 “Prohibition False Trade Descriptions”은 물품유통시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사실과는 다른 허위의 설명이나 물건을 제공하였을 경우 해당 당사자는 형사적 책임을 갖게 되는 법이다.

11) <http://www.expertscnes.fr>, CNES의 사설 자격이며, 국가공인 자격제도는 아님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CNES 연구소에 지원 및 합격을 해야한다.

12) CNES의 소속감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거나, 범죄경력 없이 10년 이상의 미술시장관련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CNES의 이러한 과정은 1988년에 '미술품감정사유럽연맹'(CEDEA : La Confédération Européenne Des Experts d'Art)를 설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13) 공식적인 감정사는 그렇지 않은 감정사들과 다르게 대외적인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인증감정사는 세관의 심사물품을 감정하는 감정사(experts assesseurs près les commissions douanières)와 사법기관으로 부터 인증을 받은 사법 감정사(experts judiciaires)가 있다.

14) FNEPSA : Fédération Nationale des Experts Professionnels Spécialisés en Arts

15) 4. (1) A trade description is an indication, direct or indirect, and by whatever means given, of any of the following matters with respect to any goods or parts of goods:

- (a) quantity, size or gauge;
- (b) method of manufacture, production, processing or reconditioning;
- (c) composition;

이때 물건의 설명 범위에는 제조자, 제작형태, 크기 및 수량 등 다양한 속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거짓된 정보로 수요자의 해석이 달라질 경우 거래상 허위 설명에 해당된다.¹⁶⁾

동 법에 따라 미술품 유통 시 매도인, 경매인, 감정사 중 누구라도 해당 미술품의 정보와 관련하여 거짓된 정보를 바탕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2) 민사적 책임

1) 감정사의 책임

의뢰인은 감정사와 의뢰품에 대한 상태, 제작연대, 진위여부, 시장가치 등에 관한 정보를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의뢰인은 결과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감정사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지급한다. 하지만 감정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정보 중 거짓된 부분이 있을 경우 감정사는 합리적인 주의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기에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가지게 된다. 이때, 합리적인 주의와 책임에 대한 판단은 유사한 의뢰에 대해 일반 전문성을 가진 자가 객관적으로 감정의 이행 범위가 다름을 입증해야 한다.¹⁷⁾

이 때문에 대부분의 감정사는 감정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정의에 있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약관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¹⁸⁾

- (d) fitness for purpose, strength, performance, behaviour or accuracy;
- (e) any physical characteristics not included in paragraphs (a) to (d);
- (f) testing by any person and results thereof;
- (g) approval by any person or conformity with a type approved by any person;
- (h) place or date of manufacture, production, processing or reconditioning;
- (i) person by whom manufactured, produced, processed or reconditioned;
- (j) other history, including previous ownership or use.
- (2) The matters specified in subsection (1) shall be taken –
 - (a) in relation to any animal, to include sex, breed or cross, fertility and soundness;
 - (b) in relation to any semen, to include the identity and characteristics of the animal from which it was taken and measure of dilution.
- (3) In this section “quantity” includes length, width, height, area, volume, capacity, weight and number.
- (4) Notwithstanding anything in subsections (1) to (3), where provision is made under the Food and Drugs Act prohibiting the application of a description except to goods in the case of which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that provision are complied with, that description, when applied to such goods, shall be deemed not to be a trade description.

- 16) 5. (1) A false trade description is a trade description which is false to a material degree.
- (2) A trade description which, though not false is misleading that is to say, likely to be taken for such an indication of any of the matters specified in section 4 as would be false to a material degree, shall be deemed to be a false trade description.
- (3) Anything which, though not a trade description, is likely to be taken for an indication of any of those matters and, as such an indication, would be false to a material degree, shall be deemed to be a false trade description.
- (4) A false indication, or anything likely to be taken as an indication which would be false, that any goods comply with a standard specified or recognised by any person or implied by the approval of any person shall be deemed to be a false trade description, if there is no such person or no standard so specified, recognised or implied.

17) 일반적으로 진본성 평가와 관련 작가가 현존하지 않을 경우 감정이행의 결과는 상대적일 수 밖에 없다.

18) the complete accuracy of any opinion expressed

2) 매도인의 책임

미술품 거래에 있어 매도인이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소개서나 감정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보장의무위반 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된다.¹⁹⁾

책임의 범위는 매도인의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해당 미술품을 인수하기로 결정해도 보장책임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부가될 수 있다.²⁰⁾

3. 프랑스 미술품 유통 분쟁

(1) 사기

프랑스의 민법전 제1116조에는 사기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해당 조항에는 당사자의 일방적 기망행위가 없는 계약체결임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합의는 무효의 원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기는 추정이 아닌 증명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¹⁾ 미술품의 유통과정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감정사나 매도인이 위작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이는 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매매 대상의 미술품이 진본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 논쟁이 일러지지 않은 것이 사기인지는 또 다른 논쟁이 된다. 때문에 이를 병독성 침묵(*réticence dolosive*)에 해당되며 학설과 판례에 의해 침묵이 사기로 해당되기 위해서는 침묵으로 사실이 감춰진 계약이 만약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어야 한 경우여야만 한다.²²⁾

(2)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민법전에는 제 1641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은 “매매물의 하자로 인해 그 기능 및 역할이 감소되었을 경우, 그리고 매수인이 그 하자의 발견이 사전 인지하였다면 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지불대가를 감소하

19) Sale of Goods Act 1979, 11(3) “Whether a stipulation in a contract of sale is a condition, the breach of which may give rise to a right to treat the contract as repudiated, or a warranty, the breach of which may give rise to claim for damages(...), depends in each case on the contract (...)

13 (1) where there is a 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 by description, there is an implied term that the goods will correspond with the description.

20) 13 (4) Subject to section 35A below where a contract of sale is not severable and the buyer has accepted the goods or part of them, the breach of a condition to be fulfilled by the seller can only be treated as a breach of warranty, and not as a ground for rejecting the goods and treating the contract as repudiated, unless there is an express or implied term of the contract to that effect.

21) Code civil, Article 1116 / Créé par Loi 1804-02-07 promulguée le 17 février 1804 / Le dol est une cause de nullité de la convention lorsque les manoeuvres pratiquées par l'une des parties sont telles, qu'il est évident que, sans ces manoeuvres, l'autre partie n'aurait pas contracté. Il ne se présume pas et doit être prouvé.

22) 남궁술, “법규범의 발전과 판례, 프랑스민법상 ‘안전배려의무’와 ‘정보제공의무’의 발전에 있어서의 판례의 역할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vol28, 2005. 6. p322

려 노력하였을 경우 매수인은 그 하자에 대한 담보의무를 부담한다.²³⁾

하지만 미술품 유통에서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진본성 문제를 다루고자 할 경우 매매물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적절함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3) 착오

먼저 언급한 사기 및 하자담보 책임에 의한 미술품 유통의 진본성에 대한 법적해결을 위한 해석의 어려움으로 프랑스의 법원은 착오의 법리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미술품 유통과정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작품은 역사적 깊이가 있는 작품이다.

오래된 미술품의 위작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무리 전문성을 갖춘 감정사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며 최초 감정 이후 뒤늦게 위작의 오해 및 문제제기가 발생할 경우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때문에 프랑스를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미술품 유통에서의 진본성 진위여부를 넘어 제작시기, 위작의 오해 및 착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해결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법원은 진본성의 착오발생 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⁴⁾

IV. 국내 미술품 유통 진본성 확보 방안

1. 투명성 확보

미술품 유통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되는 가장 큰 요인은 매매품의 가격정보 과정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공개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가격공개 수단은 경매의 낙찰된 가격정보이지만, 이는 특정 시점 및 성향에 따라 불안정한 가격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술품 유통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우선, 가격정보의 신뢰확보를 위해 매매품의 관계자인 중개자를 비롯하여 작가 및 작가의 가족, 소비자, 매매과정의 관계자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미술품 유통시 적용되는 가격지수(Price Index)는 10년 미만의 경매기록만

23) Article 1641 du Code civil. Le vendeur est tenu de la garantie à raison des défauts cachés de la chose vendue qui la rendent impropre à l'usage auquel on la destine, ou qui diminuent tellement cet usage que l'acheteur ne l'aurait pas acquise, ou n'en aurait donné qu'un moindre prix, s'il les avait connus.

24) Art. 1110 Le contrat de gré à gré est celui dont les stipulations sont librement négociées entre les parties. Le contrat d'adhésion est celui dont les conditions générales, soustraites à la libre discussion, ont été déterminées par l'une des parties.

반영되어 있어, 실제 미술시장의 가치변화 및 해당 미술품 작가에 대한 정밀한 자료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가격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미술품 증명서 제시에 대한 의무화 추진이 실현되어야 한다. 증명서에는 진위여부 판별, 소유권에 대한 명시, 작품의 감정평가, 관련 보증서 및 미술품의 저작권 등 수요자가 매매거래를 하려는 적합성 및 기대성을 충족하는 가이드를 의무공시 해야 할 것이다.

2. 정책 및 제도적 개선

국내 미술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개선을 위해 우선 화랑이 신용보증기금 지원 및 금융권으로부터 미술품을 담보취급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술품 유통시장에서의 미술품 가치정보를 세밀히 분석하고, 시세변화 추이를 통한 적정가격의 산출 및 공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미술품 유통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부당거래 단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미술품은 작가의 뛰어난 상상력을 원천한 창작의 결과물이며, 이러한 미술품의 유통은 작가의 창작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3. 법제 및 감정인력 윤리규정

국내 미술품 유통시장의 신뢰와 공신력을 위한 과정 중 감정의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 및 제반의 행정법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미술품 유통시 경매나 빈번한 음성적 거래는 미술품 유통의 선진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며, 인증된 전문 감정사에 의한 감정서의 국내편찬 활성화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다수의 감정위원은 상업화랑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국립미술품 기관의 전문적인 감정기관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미술품 감정의 감정사 제도 운영이 마련되는 동안 공신력을 확보한 국제기구가 그 권한 및 자격을 수여한다면 현행 국내 감정시스템의 과도기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4. 중재서비스 확보

세계적인 미술 거래의 양적 증가에 따라 미술과 관련한 법은 점점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것과 관련한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예술품의 문화적, 비물질적, 금전

적 가치와 결합된 예술 시장의 국제적 특성은 그러한 분쟁이 복잡한 법적, 윤리적 문제 등을 포함할 가능성 또한 높인다. 이 분야에 보고된 조정 또는 중재의 제도가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예술에 관한 분쟁이 가장 만족스럽게 해결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예술과 관련된 국제 계약-대출, 판매 및 보험 문제-등에 중재 조항이 포함되고 있는 추세이다.²⁵⁾

2018년 6월 미술품의 진위여부에 관련한 국제적 중재기구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최초로 설립되었다. 네덜란드 중재기구 the Netherlands Arbitration Institute (“NAI”) 와 미술 감정기구 Authentication in Art (“AiA”)이 협력하여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Art (the “CAfA”)를 설립한 것이다. CAfA 는 비영리 기구로서 미술품의 유통 및 진품 감정에 주로 전력하는 기구이다. 역사적으로 미술시장은 체계적인 문서 및 계약 영수증 등이 없는 매우 비공식적인 절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많은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았다. CAfA 의 개입에 따라 중재에 대한 규칙들은 처음부터 계약에 적용되게 된다. CAfA는 분쟁, 미술 및 예술 법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중재 규칙에 따라 진본 문제, 저작권, 계약과 같은 예술 관련 분쟁의 일반적인 문제에 관한 중재를 관리하게 된다.²⁶⁾

이 기구는 기존의 유네스코 기구의 중재와 조정 기능을 보완해주는 역할로서 주목 받고 있으며 가장 큰 이점으로는 기밀 유지성에 있다 원칙적으로 중재가 대외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에 분쟁의 당사자들에게는 구미가 당기는 서비스가 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들이 자체 중재자와 조정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어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

그리고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 수준이 충분한 전문가들의 결정은 당사자 및 관련 커뮤니티에 의해 수용될 가능성이 높게 되어 전문성도 확보된다. 더불어 당사자들이 절차 진행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동의할 권리가 있기에 융통성 있고 예측이 가능하게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된다.²⁷⁾

한편, 국내에서는 2019년 8월 출범된 화랑협회에서의 미술품 감정을 위한 새기구의 활동을 개시하였다. 하지만 민간기업이자 동시에 미술품 감정에 얽힌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감정평가 시스템의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미술유통법 개정안에 화랑협회를 미술품감정연구센터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계류 중이며 특정기관의 선정 및 위탁형태로 운용되기에 미술품 유통시장의 개선효과도 의문이 높아진다. 결국 국내의 감정 전문가의 경력과 감정 역량을 인정하되 정부의 공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통해 제도적인 보완으로 연결될 필요성이 있다.

25) Bryne-Sutton, Quentin. “Arbitration and Mediation in Art-Related Disputes.” *Arbitration International* 14.4 (1998): 447-456.

26) World Wide Web : <https://authenticationinart.org/cafa/> (검색일자 : 2019. 10. 8)

27) World Wide Web :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64994> (검색일자 : 2019. 10. 8)

V. 결 론

국내 미술유통시장은 최근 문화산업의 발달과 함께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하지만 타 분야에 비해 미술품 유통시장은 작품의 진본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취약한 공신력은 시장의 발달과 참여를 제한하여 왔다.

본 연구는 미술품 유통에 관한 감정법제 및 다양한 제도가 있는 영국 및 프랑스의 감정 시스템을 통해 국내 미술품 유통시장에서의 진본성 확보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술품의 유통시장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진본성 확보를 통한 국내 미술품 유통산업의 활성화와 선진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상기 연구목적을 위해 영국과 프랑스 해외 미술품 유통의 법체조항 및 분쟁 제도를 분석하고 국내 미술품 유통시장에 적합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영국과 프랑스의 미술품 유통과정에서의 시스템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미술품 감정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해외 제도를 바탕으로 감정법제 및 윤리규정에 대한 개선점을 비교법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하여,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공식적인 미술유통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현실 속에서도 영국과 프랑스는 특별한 미술품 감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방식에 있어서 확연히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영국은 미술유통시장에 국가적 측면의 제도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술전문가들에 의한 완전 자율적 감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국가의 사법부와 행정부에서 미술품 인증감정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미술유통시장에서의 감정업무가 권위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감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경매사 운용방식 및 미술품의 감정·경매·매도의 과정에서 법적책임과 관련하여 영국과 프랑스는 각자의 방식으로 미술품의 진본성 확보를 위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물론, 살펴본 국가는 세계적인 문화유산 보유국이자 미술품유통에 대한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국내의 미술품 유통시장과 비교하기에는 규모 및 제도지원 부분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내의 미술시장도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고, 그 안에서 위작 미술품에 대한 부적절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의 미술유통시장의 진본성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국내 미술유통시장의 진본성 확보를 위해 우선 투명성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미술유통시 가격지수와 미술품 증명서제도를 제안하였고, 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 적정가격산출 공개시스템과 미술품의 부당거래 단절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법제 및 감정인력의 윤리규정을 통해 감정의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 및 제반의 행정법적인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술산업에서의 국제 계약·대출 및 보험 문제 등에 중재 조항이 포함되고 있는 추세를 바탕으로 미술품의 진위여부에 대한 국제적 중재기구의 예시를 통해 미술품 유통시장에서 중재를 통한 공정성 담보를 위한 가능성을 확인하여 국내 미술품 유통시장에서의 진본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리고 이 모든 방안은 미술품 유통의 투명한 거래와 그 속에서의 안정적 성장이 보장 될 때 가능하며, 정책 및 제도적 측면의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실천이 반 듯 뒷받침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서현(2019), 한국 미술품 감정 및 평가에 관한 법제도와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남궁술(2005), 법규범의 발전과 판례, 프랑스민법상 ‘안전배려의무’와 ‘정보제공의무’의 발전에 있어서의 판례의 역할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vol28, 2005. 6. p322.
- 문화재보호법 제10장 제75조 : 매매 등 영업의 허가
- 박명광(2007), 위작 근절을 위한 미술품 감정의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p10.
- 박우찬(1993), 미술품 경매제도의 실효성과 문제점, 미술세계, 한국법제연구원, p65.
- 신아람(2017),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 미술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시 예상되는 부작용, 미술세계 Vol60, p118.
- 이재경(2015), 국내외 미술품감정 관련 법제 연구 및 미술품감정 인력의 윤리규정,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준희(2008), 미술품 감정,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월간미술, p154.
- 이준형(2008), 문화예술 시장과 법적 제도적 규제 : 경매 시장과 추급권에 관한 최근 프랑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pp. 84-104
- 윤범모(1998), 한국근대미술품과 진위문제, 현대미술학회 논문집.
- 조신숙(2011), 한국 미술품 경매의 활성화를 위한 미술품 감정 연구,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 케서린킴(2017),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 미술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시 예상되는 부작용, 미술세계 Vol64, p58.
- 최병식(2006), 한국미술품감정의 중장기 진흥 방안, 문화관광부, 2006. p.146.
- 최병식(2006), 한국미술품 감정의 대안-외국사례를 통해 본 진본성확보와 중장기 발전방안, 문화체육관광부, p7.
- 최병식(2002), 한국 미술품 유통의 구조와 개선방안연구의 한국과 프랑스의 미술품 경매 시장 비교를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Vol5. 2. pp. 47-68.
- 프랑스의 민법전에는 제 1641조
- Bryne-Sutton, Quentin. "Arbitration and Mediation in Art-Related Disputes." *Arbitration International* 14.4 (1998): 447-456.
- Prohibition False Trade Descriptions
- Sale of Goods Act 1979, 11(3)

World Wide Web

<http://www.expertscnes.fr>(검색일자 : 2019. 10. 8)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64994>(검색일자 : 2019. 10. 8)

<https://authenticationinart.org/cafa/>(검색일자 : 2019. 10. 8)

ABSTRACT

A Study on the New Scheme for South Korea's Artwork Authenticity With a Review of the Overseas Art Distribution Dispute Setting System

Rim, Sung Ryun*

Byun, Seung Hyuk**

Compared to Korea's recently expanding art distribution market, the difficulty of securing the authenticity of art is hindering the healthy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market. In this regar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appraisal system in the UK and France's art distribution process are examined as excellent cases in foreign countries. In the UK, there is a full autonomous appraisal system by art experts without state intervention. In France, the judiciary and the administration of art have an appraisal system for art works, so the appraisal work has reliability and objectivity. Through the above system, this study suggests measures to strengthen transparency in art trade and to break unfair practices in order to secure the authenticity of the domestic art distribution market.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 professional appraisal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law regulation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ensuring fairness through mediation through the example of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body.

Key Words : art distribution market, artwork authenticity, arbitration

* Sung Ryun Rim, Ph.D., Pierson Collage, Pyeongtaek Univ.(First Author, sungrim@ptu.ac.kr)

** Seung Hyuk Byun., Hanshin medipia Medical Center(Co-Author, peter0948@hsmedipia.com)